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02

발의연월일: 2021. 7. 29.

발 의 자:김성주·강선우·강준현

김민철 • 양정숙 • 윤준병

이정문・최종윤・최혜영

한병도 · 허종식 · 홍성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 곤란 통보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에 대한 문제 제기시 타당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며, 특히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이송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보호자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수용곤란 통보의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안 제4

8조의2제2항), 이송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여(안 제48조의2제3항신설)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31조의4제3항 신설) 중 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및 비응 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응급실에 출 입하거나(안 제31조의5제4항, 제5항 신설),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 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관계 서류 검사 및 관계인 진 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 과 경증 및 비응급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 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31조의5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31조의3에 따른 재지정 심사 등을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응급실을 출입하도 록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응급실을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48조의2제2항 중 "응급의료기관의 장은"을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

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 의료지원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를 "제2조 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로 하고, 같은 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9조의2(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운행기록대장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 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할 구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제1항에 따른 보고

와 업무 검사 등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		
	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		
	증도 분류 결과 경증 및 비용		
	급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		
	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		
	조제2항을 준용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		
	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u>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에</u>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31		
	조의3에 따른 재지정 심사 등		
	을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및		

<신 설>

(생 략)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 의료지원센터를 통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 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응급실 을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응급실을 출 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① (현행과 같음)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 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제2조제7호 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 이 관련 내용을----.

>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59조의2(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 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 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운행기록대장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명할수 있다. 이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관할 구역 내 응급의료종사 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업무 검 사 등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② (생략)

<u> </u>			
제62조(과태료)	1	 	

-----**.**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 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 출을 하지 아니한 자
- ② (현행과 같음)